

가. 가구원수 산정기준의 범위

- 1) 가구원수에 산정되는 사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아동을 기준으로 2촌 이내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사람
 -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재혼한 부 또는 모와 새로운 형제·자매도 가구원수에 포함
- 2) 가구원수에 산정되지 않는 사람: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지 않은 사람은 2촌 이내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이더라도 가구원수에 산정하지 않음 ※ 예를 들어, 부 또는 모가 직장 등의 문제로 타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는 가구원수에 산정하지 않음
- 3) 가구원수 산정 확정 절차 :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람(세대원)을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을 확인, 외국인배우자 등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등재를 요청 후 확인

나. 선정기준별 이용아동 구분

- 1) 돌봄취약아동: 선정기준에 따른 소득기준, 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의 아동 또는 돌봄특례에 해당하는 아동
- 2) 일반아동 : 연령기준을 만족하는 아동 ※ 3명 이상 다자녀 가족의 아동 및 맞벌이 가정의 아동 포함
 - 다만, 동시 입소신청시 가구특성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은 연령기준만 만족하는 아동보다 이용순위를 우선함
- 3) 이용아동 등록: 시설별 신고정원의 60%이상은 돌봄취약아동이어야 하며, 일반 아동은 4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
 - 가) 다만, 시군구청장은 지역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음의 범위 내에서 임의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일반아동 등록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1)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60%
 - (2) 그 외 지역 : 50%



- 나) 시군구청장은 돌봄취약아동의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수요파악 등 지속적인 관리방안 마련 필요
 - ※ (예시) 시군구청은 취약계층 아동수와 시설의 위치 및 배치, 시설수, 지역의 총정원 대비 현원, 초등돌봄교실 등 타 돌봄 운영현황, 해당 지역 보호자의 직업특성 및 가구특성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두 일반아동 40%로 하거나, 지역별로 A읍은 일반아동 40%, B면은 50%, C면은 60%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 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1호)

- 1.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 2.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 보전녹지지역
 - 나. 관리지역 중 생산 보전관리지역
 -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6.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전 지역
 -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상업지역: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3. 농림지역
- 4. 자연환경보전지역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등을 통해 확인 필요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도서·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1. 산간지역
- 2. 낙도(落島)
- 3. 수복지구(收復地區)
- 4. 접적지구(接敵地區)
- 5 광산지구(鑛山地區)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도서·벽지지역과 등급별 구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의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 ※ 별지는 부록5 참조(299쪽)
- 4) 이용아동별 아동수는 일반아동의 등록비율에 해당하는 숫자의 소수점 이하를 올림(반올림이 아님)하여 산정함
 - ※ 예를 들어, 신고정원이 29명인 읍면지역 시설의 경우 29의 60%는 17.4명이나 소수점을 올림하여 60%는 18명으로 산정하고, 40%는 11명(29명-18명)으로 함

다. 선정기준

1) 소득기준

- 가) 다음에 해당하는 증명서 등이 확인되는 경우(다음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소득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2)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증명서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 증명서
- (6)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 장애수당 또는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8)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아동이 등록장애인인 경우에 한함)
- (10)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조손가족인 경우에 한함)
- (11)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증명서나 확인서가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직접 확인 필요
- 나) 상기 가)에 해당하지 않으나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다음의 가구 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이하	3,088,079	106,150 (118,378)	92,988 (103,700)	107,179 (119,526)
3인	3,983,950	137,051 (152,839)	129,502 (144,502)	153,953 (153,953)
4인	4,876,290	168,195 (187,571)	171,434 (191,183)	170,536 (190,182)
5인	5,757,373	200,355 (223,436)	212,560 (237,047)	203,558 (227,008)
6인	6,628,603	228,860 (255,225)	248,783 (277,443)	233,144 (260,002)
7인	7,497,198	257,849 (287,553)	284,709 (317,507)	263,923 (294,327)
8인	8,365,793	296,707 (330,888)	329,659 (367,636)	308,297 (343,813)
9인	9,234,388	321,769 (358,837)	356,168 (397,199)	337,302 (376,159)

- ※ ()안의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는 경우의 금액임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아동도 동일한 선정기준에 따라 적용 가능



- (예시) 조부모와 장남의 자녀인 손녀가 거주하는 3인가구로 조부모의 건강보험은 차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차남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손녀는 주거를 달리하는 부의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어 손녀의 부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가구원수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방법
 -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있는 조부모와 손녀를 합해 가구원수는 3인으로 하며, 조부모와 손녀는 모두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0원이며, 따라서 소득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야 함

2) 가구특성기준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나) 차상위계층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외의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8. ~ (의료급여법 참고)
 -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결정된 가구를 의미하며, 가구형태가 한부모가정인 모든 가구를 의미하지 않음에 유의

-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발급되는 사람의 아동 또는 발급되는 아동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차상위자활 대상자)의 아동
-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 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의 (손) 자녀인 아동 또는 경감 받는 아동
- (6)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의 (손)자녀인 아동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
- (7) 「장애인연금법」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과 동거하는 (손)자녀인 아동
-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아동
- (9)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는 조손가족의 아동 ** 가구원수에 산정되는 (외)조부·모 중 1인 이상 받는 경우 해당
- (10)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 다)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다문화가족이 아님
-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아동
 - 가구워수 산정기준으로 가구워에 해당되는 사람이 등록장애인인 경우
 - ※ 2)/나)/(6)~(8)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우선 확인하고.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적용



- 마) 조손가족의 아동: 가구원수 산정기준으로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경우
 - ※ 예를 들어, 조부모2인, 조부모의 차녀1인, 장남의 손자녀2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차녀 1인이 있더라도 가구원수 산정기준으로 조부모와 손자녀만 가구원수로 산정하므로 조손가족으로 판단
 - ※ 2)/나)/(9)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우선 확인하고.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적용
- 바) 한부모가족의 아동 : 2)/나)/(2)의 차상위계층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이외에 가구형태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인 한부모가족인 경우

3) 연령기준

- 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연령기준에 적합함
 - (1)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2) 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 (3)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 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와 형제·자매가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이용하려는 경우로 그 중 1명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고 다른 1명은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
 - ※ 형제·자매가 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 형제·자매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미 이용 중이더라도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가능(중복이용제한 미적용)
 -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5)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 (6)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 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 동조항 적용시 중복이용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4) 돌봄 특례: 일반아동에 해당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 돌봄취약아동으로 선정 가능

- 가) 주민등록상 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가출·행방불명·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족인 아동으로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나) 보호자의 질병(중증 만성질환, 암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다) 보호자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라) 귀가 후 장시간 홀로 남겨지거나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사회복지관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마) 3명 이상 다자녀가족의 아동 또는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바)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유의사항

- 1. 연령기준에는 적합해야 함
- 2. 돌봄특례에 해당되는 사례는 구비서류 증빙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서식4호] 신청·접수시 반드시 보호자와 상담(유선 또는 대면) 또는 필요시 가정방문 등을 실시하고 돌봄필요성 확인결과서(서식28호)를 작성·(내부)결재 후 결정
- 3. 돌봄특례 적용시 소득기준 및 가구특성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기에 해당되는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용

라. 이용아동 결정

1)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기아동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결원이 생겼을 시에는 돌봄취약아동에게 우선순위 부여



- 2) 지역아동센터 소재 시·군·구청이 승인하는 경우 다른 지역 주소지에 거주하는 아동도 관할 지역아동센터에 입소 가능
 - 아동의 돌봄서비스 결정은 아동이 거주하는 시·군·구청에서 결정하며, 타 지역 아동 이용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거주지에서 발행한 결정통지서를 확인하여야 함
- 3) 2020년 이전 기준에 따라 돌봄서비스가 결정된 이용아동의 결정은 2021년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며, 별도의 변경신청 없이 2021년 기준에 따라 결정하지 않음 ** 이용아동 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돌봄서비스 변경 신청(44쪽) 참고

마. 중복이용 제한

-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 받으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학비를 지원 받으면서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등 유사한 목적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와「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없음
- 2) 다만, 다음의 경우는 중복이용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가)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아동이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하는 경우

▶ 돌봄서비스 연계

- 지역아동센터 신고정원 및 운영시간에 맞춰 저녁돌봄서비스 연계
 - 센터의 시설기준과 이용아동 신고정원 내에서 저녁돌봄 연계시간대(16~19시 등) 초등돌봄교실 이용아동 충원
- 초등돌봄교실 연계 활성화를 위해 학교 등의 지원 필요
 - 지역사회 돌봄협의체를 통해 상세 지원내역(운영비, 프로그램 교구 등) 협의
- 나) 미취학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취학 전 졸업반인 경우:취학년도 2월부터(1개월) 이용 가능
- 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형제·자매인 미취학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미 이용하고 있으나 시간대를 달리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형제·자매가 모두 이용하려는 경우로 그 형제·자매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미취학아동이 시간대를 달리하여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이나 기타 지역 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